

의안번호	2202509
의 퇴 인	박상혁의원
회 답 일	2024. 11. 4 .
추 계 번호	24D245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정부 출연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¹⁾,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등의 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8억 9,600만원, 2030년 20억 6,6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97억 2,300만원(연평균 19억 4,5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조정위원회 설치(안 제37조)	1,871	1,825	1,895	1,966	2,041	9,598	1,920
서면실태조사(안 제55조)	25	25	25	25	25	125	25
합 계	1,896	1,850	1,920	1,991	2,066	9,723	1,945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7조(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전자상거래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전자상거래 조정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1) 「소비자기본법」 제41조(재원) 한국소비자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55조 (서면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등의 분야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함	의무규정
3	안 제73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교육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등의 분야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연수 등을 수행할 수 있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등은 동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7조(전자상거래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2	안 제55조 (서면실태조사)	○	
3	안 제73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교육 등)	—	미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등의 분야에서 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연수 등을 교육기관등에 위탁하고, 교육기관등은 동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한국소비자원에 전자상거래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발생할 것인데, 현재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전자상거래등에 관한 분쟁에 관한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어서, 개정안의 조정위원회 설치에 따른 전자상거래등 분야의 인원을 확충 시 인건비, 사업비 및 자산취득비를 추계대상으로 하며, 운영비는 한국소비자원의 기존 예산 안에서 충당 가능할 것으로 보고,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²⁾
- 개정안 부칙에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안 심의의결 기간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조정위원회 설치·운영(안 제37조)

- 개정안에 따라 증가하는 전자상거래 및 플랫폼 거래에서의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 개정안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기존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인건비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함
- (현황) 현재 이 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은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³⁾ 등에서 분쟁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2024.10)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2.5	2.1	2.0	2.0	2.0	2.0	2.0
명목임금상승률	3.2	3.6	3.9	3.8	3.8	3.8	3.8

3) 「소비자기본법」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4명(비상임위원 145명), 국장 1명, 팀장 5명, 직원 38명(5팀⁴⁾)으로 구성됨
 -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2024년 소요예산은 45억 9,900만원임(인건비 40억 800만원, 사업비 5억 5,000만원, 운영비 4,100만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분쟁조정 사건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아래와 같음

[표 2] 최근 5년간 분쟁조정사건 접수 현황: 2019~2023년

(단위: 건, %)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증가율(%)
일반분야	2,269	3,374	3,326	2,728	4,160	16.4
전자상거래 분야	1,123	1,891	1,477	1,390	2,230	18.7
합계	3,392	5,265	4,803	4,118	6,390	17.2

자료: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계산

- (인건비) 개정안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두고, 국장 1명, 팀장 2명, 사건담당자 10명(4급 5명, 5급 5명), 총 16명을 두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에서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은 상임으로 하도록 규정함
 - －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연간급여는 기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례를 준용하여 2024년 기준 각각 1억 7,901만원, 1억 4,912만원 적용⁵⁾

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2. 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제6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63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분쟁조정회의: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2. 조정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 4) 사무국 직원은 조정총괄팀 5명, 조정1팀 9명, 조정2팀 7명, 조정3팀 9명, 조정 4팀 8명 총 38명으로 구성됨
- 5) 연간급여에는 각종수당 및 4대보험이 포함됨

- 비상임위원 47명에 대한 회의수당 등은 사업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함
- (국장·팀장) 2023년 전자상거래 분야별 건수를 고려하여 1개 부서와 2개 팀(공산품팀, 서비스팀)으로 구분하여 1명의 국장과 2명의 팀장을 두며, 2급 연간급여 1억 1,488만원과 3급 연간급여 9,639만원을 각각 적용 (2024년 기준)
- (팀원) 1인당 처리건수와 분쟁조정 사건 증가율을 적용하여 필요 인력을 10명으로 산출
 - 기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2023년 1인당 처리건수는 139건(전체사건 6,390건 ÷ 사건처리 인력 46명)
 - 이 중 전자상거래분쟁조정건수의 2026년 예상 접수건수는 3,730건(2,230건(2023년 접수건수)×(1+18.7%)×(1+18.7%)×(1+18.7%))
 - 필요 인력 수 27명 = 3,730건 ÷ 139건
 - 산출된 27명에 현재 전자상거래 분야 기투입인력 17명을 차감하면 10명이 추가로 필요(이때 분쟁조정건수는 매년 증가가 예상되나 더 이상의 증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 본 추계에서는 4급 5명, 5급 5명으로 가정함
 - 기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례를 준용하여 4급 7,511만원, 5급 5,519만원을 적용하며⁶⁾, 국회예산정책처의 임금상승률 적용

[표 3] 전자상거래 분야 분쟁조정 필요인력 산출근거

(단위: 건, 명)

	2023		2026		
	사건 (a)	처리인력 (b=a/139)	사건 (c)	처리인력 (d=c/139)	추가필요인력 (e=d-b)
전자상거래 분야	2,230	17	3,730	27	10

주: 139는 전체 사건수 6,390건을 직원 수 46명으로 나누어 추정된 직원 1인당 처리건수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6) 연간급여에는 각종수당 및 4대보험이 포함됨

[표 4] 인건비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인원수 (a)	위원장	1	1	1	1	1	
	상임위원	2	2	2	2	2	
	국장 2급	1	1	1	1	1	
	팀장 3급	2	2	2	2	2	
	사원 4급	5	5	5	5	5	
	사원 5급	5	5	5	5	5	
연간급여 (b)	위원장	193	200	208	215	224	
	상임위원	161	167	173	180	186	
	국장 2급	124	128	133	138	144	
	팀장 3급	104	108	112	116	120	
	사원 4급	81	84	87	90	94	
	사원 5급	59	62	64	66	69	
소요비용 (a×b)	위원장	193	200	208	215	224	1,039
	상임위원	321	333	346	359	373	1,732
	국장 2급	124	128	133	138	144	667
	팀장 3급	208	215	224	232	241	1,119
	사원 4급	404	420	436	452	469	2,181
	사원 5급	297	308	320	332	345	1,602
합계		1,546	1,605	1,666	1,729	1,795	8,341

자료: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 (사업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인건비 대비 사업비 비율인 13.7%를 적용하여 추정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2024년 소요예산은 45억 9,900만원(인건비 40억 800만원, 사업비 5억 5,000만원, 운영비 4,100만원)으로 인건비 대비 사업비 비중은 13.7%(5억 5,000만원÷40억 800만원)임

[표 5] 사업비 추정: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인건비 (a)	1,546	1,605	1,666	1,729	1,795	8,341
사업비 (b=a×13.7%)	212	220	229	237	246	1,14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자산취득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정한 1인당 자산취득비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후, 인원 수 16명을 곱하여 1억 1,300만원(16명×703만원) 산출
 - 조정위원회 설치 첫 해인 2026년에 발생하는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한 연구용역인 『법안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2020년)』에서 산정한 1인당 자산취득비 589만원(공공기관)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 적용 후, 조정위원회의 신규 인원수 16명을 곱하여 1억 1,300만원(16명×703만원) 산출
- (추가재정소요) 개정안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 총 95억 9,8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인건비	1,546	1,605	1,666	1,729	1,795	8,341
사업비	212	220	229	237	246	1,145
자산취득비	113	—	—	—	—	113
합계	1,871	1,825	1,895	1,966	2,041	9,59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서면실태조사 (안 제55조)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등의 분야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추계한 결과 매년 2,5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면실태조사 중 전자상거래등 분야와 유사한 사례인 가맹분야 및 대규모유통업 분야 서면실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인 2,500만원⁷⁾과 동일하게 매년 2,500만원으로 추정함

7)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및 대규모유통업 분야 서면실태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2,500만원씩 편성되어 왔음. 2023년부터는 실

[표 7]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서면실태조사	25	25	25	25	25	12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위원회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 총 97억 2,300만원(연평균 19억 4,5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8]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조정위원회 설치	1,871	1,825	1,895	1,966	2,041	9,598	1,920
서면실태조사	25	25	25	25	25	125	25
합 계	1,896	1,850	1,920	1,991	2,066	9,723	1,94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태조사 예산을 각각 7,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회에서 실태조사 응답률 제고 지적에 따라 대면조사 비용을 각각 5,000만원씩 증액한 결과임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여은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은구	02-6788-4673	cecil@assembly.go.kr